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 3년 만에 대면 시행된 위원회로, 최근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내용 등 관련 동향 파악 필요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이 있을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2022. 9. 14.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9. 6. 이후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여러 사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특히 "수출불승인" 결정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8.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 되었는데,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살피고, 기존의 산업기술보호법과 새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비교해볼 뿐만 아니라, 그 시사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9. 14.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2019. 6. 이후 3년 만에 대면 개최하며 자동차 분야 수출승인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위 위원회에서 논의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철강산업 핵심기술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M&A 안건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전기전자 분야의 2차 배터리 산업 관련 핵심기술수출에 관하여는 국내 산업경쟁력 및 국가안보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출 불승인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① 기술수출 개념확대·외국인 범위확대·외국인 투자 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②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③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하여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2023년부터 개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민간 및 정부관계기관의 위원들로 구성될 민간주도의 '(가칭)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하여 전문가 자문, 주제별 연구회 운영, 산업기술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간담회,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2. 2. 3. 제정되어 8. 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률은 첨단전략기술을 보호 및 육성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지키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그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면도 있으나, 차이점도 많기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업계에서는 둘 간의 비교·검토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률의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제1조)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제1조)
적용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제2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제2조)
위원회	전략기술의 지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제9조) 수출승인: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제12조)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수출승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제7조)
지정 및 관리	산업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및 해제(제11조 제1항, 제2항) 전략기술로 지정 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제11조 제7항)	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및 해제함(제9조 제1항, 제3항)
사전판정절차	전략기술의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에 대하여 신청(제11조 제5항)	대상기관은 산업부장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 신청(제9조 제6항)
수출승인 등 절차	전략기술 수출은 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제12조 제1항) 위 승인을 받은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제12조 제5항) 그외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절차는 산업기술보호법 준용(제12조 제6항)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시 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 그 외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신고대상(제11조 제1항 및 제4항)
해외인수 등 합병 절차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제13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 필요(제11조의2), 그 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외국인투자는 신고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보호조치 등	<p>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조 제1항)</p> <p>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의 동의,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의 심각한 우려 또는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 가능(제14조 제5항)</p>	<p>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0조 제1항)</p> <p>현재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 규정 없음</p>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p>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20억 이하의 벌금 병과(제50조 제1항)</p>	<p>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제36조 제1항)</p>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	<p>정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 및 산업 공급망의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음(제10조)</p>	<p>없음</p>

3. 시사점

금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전과 다르게 수출승인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였고, 그 결과 조건부 승인 관례를 넘어 수출불승인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즉, 전기전자 2차배터리 기술의 수출불승인이 있었고, 조선분야 해외M&A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향후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해진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그에 따라 수출불승인 내지 조건부 승인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업부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부족으로 수출불승인 결정이 난 것으로 밝혔기에, 그 만큼 각 기업들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및 IRA법안 시행에 따라 전기차·배터리·바이오의약분야의 우리나라 핵심기업들의 미국 진출 및 해외 합작법인(JV)설립, 해외 M&A가 확대될 전망인 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승인절차가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 제40회 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은 기술수출 개념 및 외국인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투자 M&A 심의대상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므로 향후 진행될 본격적인 개정절차의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 시행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는 여러 혜택을 얻게 되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의 대상이 되고,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여 기술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한 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보유자는 보다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등 각종 승인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략기술보유자가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해왔는지 여부, 행정기관이 업무에 관한 민감한 자료의 제출을 명했을 때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응해야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규제방향 등에 기반하여 향후 수출승인을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우의 신사업팀은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기술 관련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02-6003-7558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02-6003-7511



신승국 외국변호사(미국)

synn@yoonyang.com
02-6182-8502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02-6003-7535



이창우 변호사

cwlee@yoonyang.com
02-6003-7580



강석준 변호사

kangsj@yoonyang.com
02-6182-8505